

「경기도시공사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 개정 안내문

경기도시공사의 개정된 평가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.

□ 개정 대상 (공사 업무편람)

- 「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
- 「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」

□ 개정 배경

- 국토교통부 고시 「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 개정사항 2건* 반영
 - * 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960호, 2019.12.24., 2020.4.1. 시행
 - ②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-1017호, 2019.12.31.

□ 개정 내용

구 분	사 유	내 용
설계 등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	설계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젊은 기술인들이 실제 설계업무에 참여하여 경력·실적을 쌓도록 기반 마련 등	①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(CEMS)을 통하여 업무중복도 검증 ② 젊은 기술인(경력 5년 미만) 참여 가점 ③ 활용실적 평가 시,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간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보호 기간 이 내에 있는 신기술 활용실적으로 조정 ④ 유사용역 수행실적 평가 시, 하도급 실적건수를 총 용역비에 대한 하도급 계 약금액 비율만큼 인정 ⑤ 실무기술인 교체 근거 신설
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	설계 등 용역업자 평가기준에 기 개정된 사항을 건설사업관리 부분에 반영하는 등 업계의 효율성 제고	① 업무중복도 평가 시 사실확인서류 발급 개선(인터넷 발급) ② 신기술 개발실적 기준 완화 ③ 용역수행실적 평가에 발주처 용역평가 결과 반영 (2021.1.1.부터) ④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용어의 변경 (용역업자→용역사업자)

□ 문의사항은 경기도시공사 안전기술처 기술기준부

(☎ 031-220-3214, gonsook@gico.or.kr)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붙 임

- 설계 등 용역업자,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개정 내용 각 1부.